



# 투명성 보고서(2022년 1월)

##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Meta Platforms, Inc.
대표자	Mark Zuckerberg
Facebook 전 세계 일일 활성 사용자(DAU) (2021년 9월 한 달 간 평균치임) <sup>1</sup>	19억 3천만 명
2020년 Meta Platforms, Inc. 총 매출액 <sup>2</sup>	미화 859억 6500만 달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Neil Potts

<sup>1</sup> 당사는 '일일 활성 사용자'를 특정 날짜에 당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Facebook을 방문하거나 당사 Messenger 앱을 사용한 Facebook의 등록된, 로그인한 사용자로 정의합니다(또한 등록된 Facebook 사용자이기도 함).

<sup>2</sup> 2020년 12월 31자로 종료된 사업연도에 관하여 Meta Platforms, Inc.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Form 10-K로 제출한 감사 받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이 섹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전반적인 노력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Meta Platforms, Inc. (“Meta”)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법에 위배되거나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Meta는 플랫폼의 안전 및 보안에 수십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는 등 플랫폼에서 불법 또는 유해한 활동을 처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당사는 한국 및 전 세계의 온라인 성적 학대 예방 전문가를 포함하여 500명 이상의 전 세계 안전 파트너와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이 분야에서의 노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 A. 정책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당사의 [커뮤니티 규정](#)은 당사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콘텐츠와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사 정책은 광범위하고, [아동 대상 성적 학대](#), [성인 대상 성적 학대](#)(합의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 및 성 관련 협박 범죄 포함), [성인 나체 이미지 및 성적 행위](#) 및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불법촬영물등도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콘텐츠에 해당됩니다.

## [커뮤니티 규정 발췌]

아동 대상 성적 착취, 학대 및 나체 이미지	성인 대상 성적 학대
<p><b>정책 근거</b></p> <p>Facebook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위협에 빠뜨리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아동 착취가 확인되면 Facebook은 관련 법에 따라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보고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녀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해당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지를 학대에 활용할 가능성과 해당 이미지를 재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p> <p>또한 Facebook은 안전 전문 위원회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온라인 안전에 관한 사안,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 관련 사안의 정책과 그 시행을 논의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Facebook이 아동 착취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p> <hr/> <p style="text-align: center;"><b>🚫</b></p> <p><b>게시하면 안 되는 내용:</b></p> <p><b>아동 성적 학대</b></p> <p>아동(실제 또는 가상의 미성년자, 영유아)의 성적 학대를 위협, 묘사, 장난, 지원하거나, 아동의 성적 학대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거나, 의도를 진술하거나, 참여를 허용하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콘텐츠(다음은 포함되지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 또는 성기가 다른 사람의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되거나 접촉되며 최소한 한 사람의 성기가 노출된 경우로 정의되는 노골적인 성관계 또는 구강성교</li> <li>• 접촉이 금방이라도 발생할 것 같거나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암시적인 성관계 또는 구강성교</li> <li>• 활동이 금방이라도 발생할 것 같거나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성기 또는 항문의 자극</li> <li>• 성적 행위로 인한 부산물의 존재</li> <li>• 동물이 포함된 위의 모든 활동</li> </ul> </li> <li>• 아동이 다음과 같은 성적 요소와 함께 묘사된 경우(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속 행위</li> <li>• 초점이 성기에 있음</li> <li>• 성적으로 흥분한 성인의 존재</li> <li>• 성적 완구의 존재</li> <li>• 성적 대상화된 의상</li> <li>• 탈의</li> <li>• 연출된 환경(예: 침대 위) 또는 전문적으로 연출된 촬영(종질/조점/각도)</li> <li>• 입을 벌린 키스</li> </ul> </li> <li>• 성적 페티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콘텐츠</li> <li>• 소아성애를 지원, 촉진, 옹호 또는 참여를 부추기는 콘텐츠(학술적이거나 확인된 의료 맥락에서 중립적으로 토론하는 경우 제외).</li> <li>• 성적 학대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아동을 이름 또는 이미지로 나타내거나 조롱하는 콘텐츠</li> </ul>	<p><b>정책 근거</b></p> <p>당사는 Facebook이 성폭력 및 성착취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Facebook은 성폭력 및 성착취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한 이러한 논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 성착취 또는 성착취를 묘사하거나,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Facebook은 또한 합의되지 않은 성적 행위의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되지 않은 성적 행위를 보여주거나 지지하거나 주선하는 콘텐츠를 삭제합니다.</p> <p>당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을 묘사하는 이미지와 이미지 속 인물의 동의 없이 공유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Facebook은 외부 안전 전문가와 협력하여 온라인 안전에 관한 사안의 정책과 그 시행을 논의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콘텐츠가 유해한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은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에 대항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및 Facebook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를 신고 및 삭제하는 방법에 관한 가이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b>🚫</b></p> <p><b>게시하면 안 되는 내용:</b></p> <p>다음은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 시간 또는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묘사(실제 예술 컨텍스트를 제외한 실제 사진/동영상 포함) 또는</li> <li>• 이미지를 공유, 제공 또는 요청하거나 공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li> <li>• 설명(피해자/생존자가 공유하거나 지지한 경우 제외)</li> <li>• 지지(동정하는 언급 및 조건부 언급 포함)</li> <li>• 의도적인 언급</li> <li>• 행동 유도</li> <li>• 참여 요청</li> <li>• 위의 피해자를 흉내 내며 조롱</li> </ul> <p>다음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는 내용의 콘텐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록체적 강압에 의한 성 착취(sextortion)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 또는 그러한 정보를 노출하겠다는 위협을 하며 금전, 부탁,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를 강요</li> <li>•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의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를 공유, 위협, 공유하려는 의도 진술, 제공 또는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업적이거나 사적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li> <li>• 나체(또는 나체에 가까운) 상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li> <li>• 다음과 같은 징조가 나타날 경우 이미지가 동의 없이 공유된 것으로 간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복성(예: 설명, 댓글 또는 페이지 제목)</li> <li>•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예: 미디어에 의해 확인된 이미지 유출) 등 독립된 출처(예: 사법당국 기록)</li> <li>• 이미지에 묘사된 사람과 Facebook에 콘텐츠를 신고한 사람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li> <li>• Facebook에 콘텐츠를 신고한 사람이 이미지에 묘사된 사람과 이름이 같음</li> </ul> </li> </ul> </li> <li>• 실제 사람의 일반적으로 성적 대상화되는 신체(가슴, 사타구니, 엉덩이, 허벅지) 부위 또는 성적 행위에 참여한 실제 사람을 올려 찍은 비영리 이미지 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creepshots'(신체의 성적 부위를 집중해 올려 찍은 사진) 또는 'upskirts'(여성 치마 속 촬영)라고 하며 이미지에 묘사된 사람을 조롱, 성적 대상화, 노출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에 포함됩니다.</li> </ul>

또한 정책 위반 콘텐츠를 방지하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커뮤니티 규정 시행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의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Meta 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 B. 신고

당사는 Facebook 과 Instagram 에서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이 신고 도구를 사용하여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고하도록 장려합니다.

**커뮤니티 규정 위반 신고.** Facebook 과 Instagram 을 사용하는 사람은 각 콘텐츠에 함께 표시되는 옵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지 기술과 숙련된 인력을 통해 아동 학대 이미지를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잠재적인 위반 콘텐츠를 식별하고 검토를 위해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Facebook 또는 Instagram 상의 콘텐츠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한국에서 지원되고 있는 Facebook 및 Instagram 의 전기통신사업법 전용 신고 양식 ([Facebook](#)<sup>3</sup> | [Instagram](#)<sup>4</sup>)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 고객 센터](#) 및 [인스타그램 고객 센터](#)를 통해 “정책 및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메뉴에 있는 신고 양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sup>3</sup>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163708662157176>

<sup>4</sup> <https://help.instagram.com/contact/384622936103164>

## [Facebook 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접근방법 안내 화면]

-  Facebook 사용 ▼
-  계정 관리 ▼
-  공개 범위, 안전 및 보안 ▼
-  정책 및 신고 ▲
-  악용 사례 신고하기 ▼
-  Facebook 문제 신고하기
-  오스트리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품법('CPA')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  사생활 침해 신고
-  해킹된 계정 및 가짜 계정
-  고인의 계정 관리 ▼
-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링크 복사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등과 신고방법은? ▲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본 신고양식** 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신고로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Facebook의 **커뮤니티 규정** 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는 기타 유형의 콘텐츠는 다른 적절한 채널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를 참조하세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다음 조항에 관련한 콘텐츠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 촬영 당시에는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 편집, 합성 또는 가공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 [Instagram 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접근방법 안내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Instagram help center interface. On the left is a navigation menu with options like 'Instagram 기능', '계정 관리', '공개 범위, 안전 및 보안', '정책 및 신고',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 '전기통신사업법(TBA)에 정의된 불법 촬영물 및 기타 콘텐츠', 'Instagram에서 거짓 정보의 확산 줄이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Instagram 데이터 정책', '이용 약관', '플랫폼 정책', '쿠기 정책', '커뮤니티 결재 약관', and 'Instagram 구매 보호 정책'.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전기통신사업법(TBA)에 정의된 불법 촬영물 및 기타 콘텐츠' and includes a '링크 복사' button. A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등과 신고방법은?'.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porting process and a list of reportable content categories: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를 포함)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 위 촬영 당시에는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를 포함)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 편집, 합성 또는 가공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At the bottom, there are three expandable sections: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nd '불법촬영물등을 게시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 C. 검토

이용자가 접수한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당사 정책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여러 관련 팀들로 전달되며, 당사는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신고 양식을 통해 제출된 콘텐츠 검토 시, 당사는 Facebook 커뮤니티 규정과 현지 법률 및 국제 인권 기준의 위반 여부를 고려합니다.

-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됩니다. 합의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공유한 계정은 대부분의 경우 비활성화 조치도 병행합니다.
- 커뮤니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촬영물등의 해당 여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이용이 한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처리 방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팀이 해당 콘텐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와 신고된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 D.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 신고가 접수되어 불법촬영물등으로 판단된 모든 URL 은 한국 내에서 검색 결과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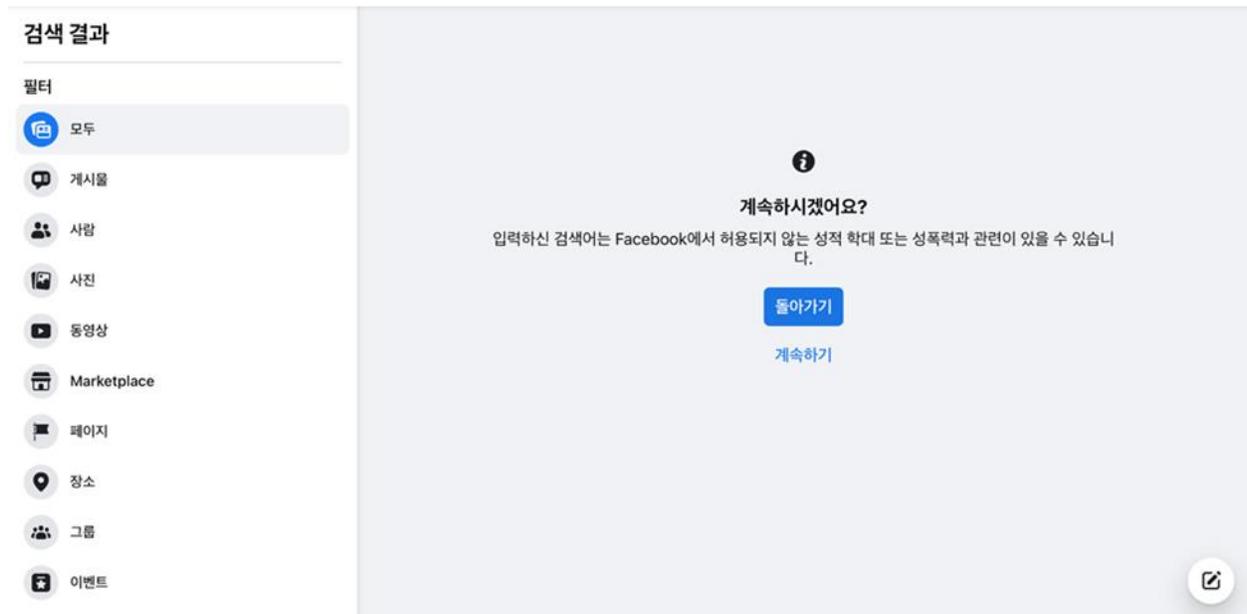
당사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검색어 (국문)를 설정하였으며, 제한 검색어 목록에 추가할 적절한 단어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검토 및 식별할 것입니다.

제한 검색어 목록에 포함된 검색어를 검색할 경우, 위반 콘텐츠 비율이 높은 탭(예: "사람", "페이지", "그룹", "이벤트" 등)의 콘텐츠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식별된 검색어는 Facebook 및 Instagram 에서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검색어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검색할 때 "타이프 어헤드" 또는 "자동완성 검색어" 로 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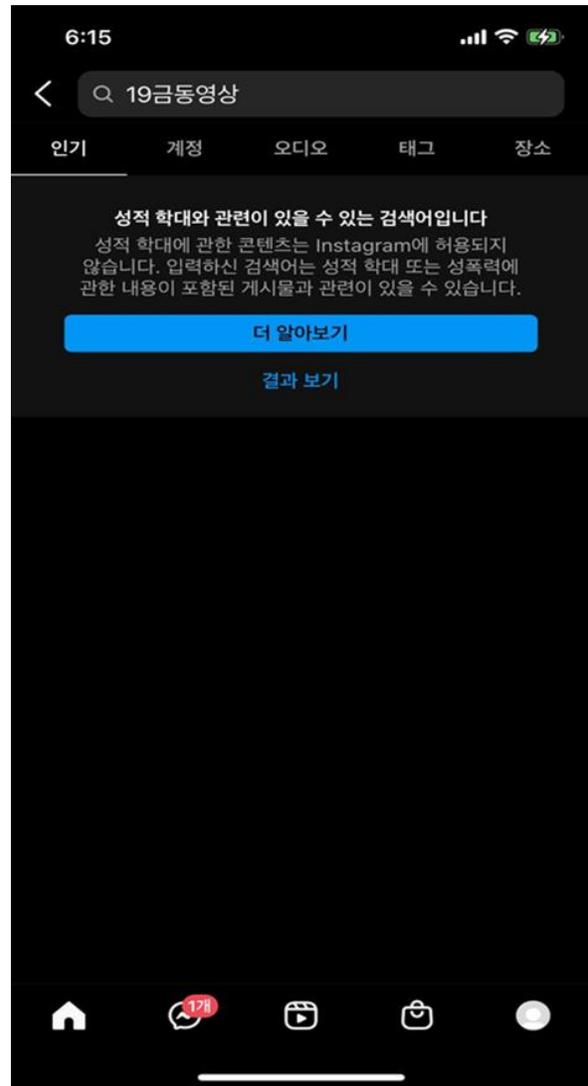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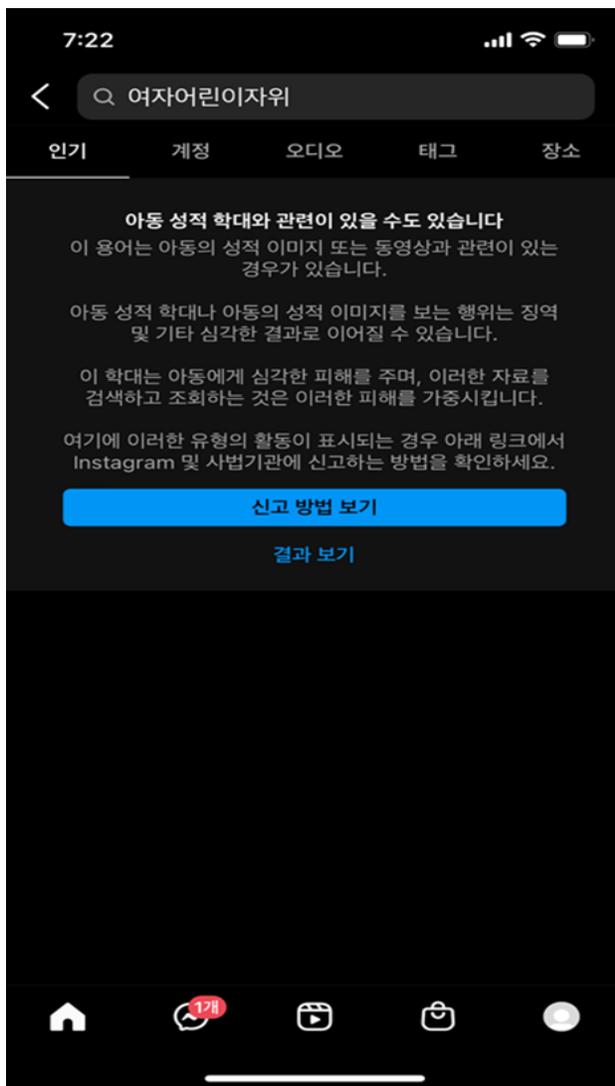
또한 이용자가 특정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 전면 또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하여, 사용자가 불법촬영물등을 검색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할 것입니다.

#### [Facebook 검색 전면/경고 메시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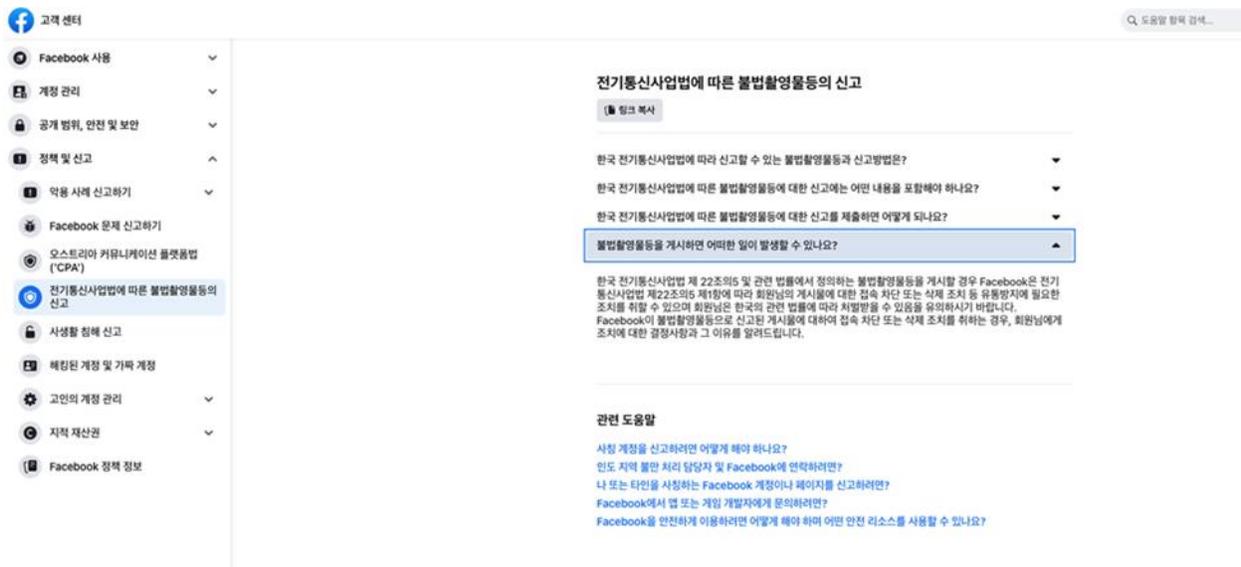
[Instagram 검색 전면/경고 메시지 예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sup>5</sup> 당사는 현재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처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한 불법촬영물등의 특징정보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데에 활용되는 기술의 성능평가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기술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한 불법촬영물등의 특징정보와 일치하여 콘텐츠 게재가 제한된 이용자에 대하여 당사 내부 검토 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Facebook 및 Instagram 고객센터 페이지의 “정책 및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메뉴에서, 당사는 이용자들에게 (a) 불법촬영물등을 게시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의 5 제 1 항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또는 삭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b)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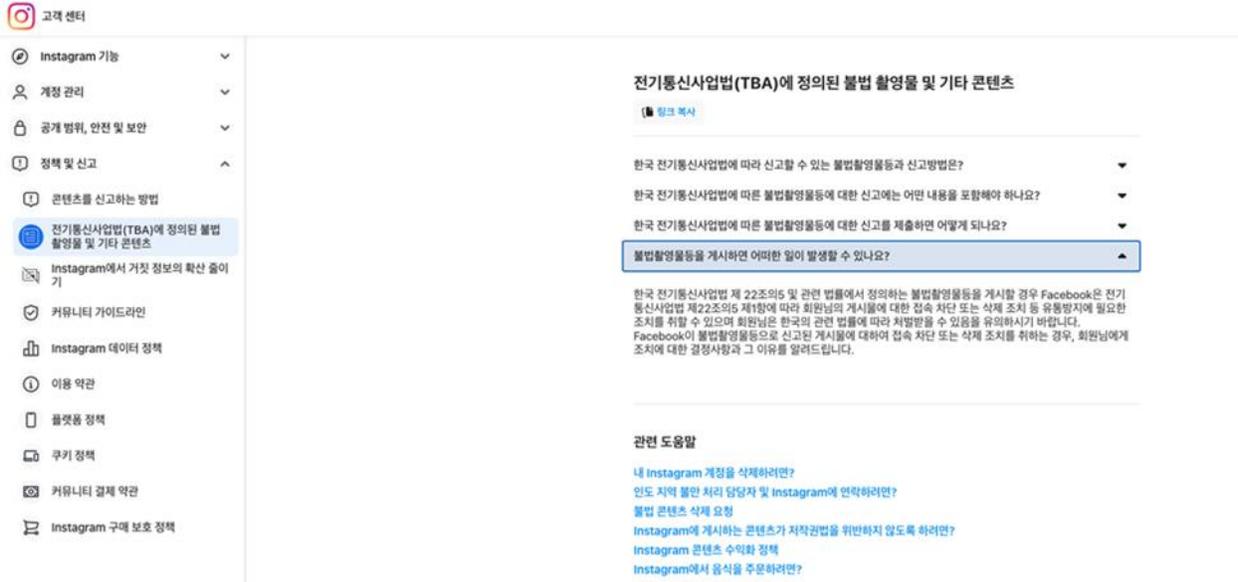
### [Facebook 의 사전경고 조치]<sup>6</sup>



<sup>5</sup>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2022년 6월 28일 기준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부분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조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 조의 5에 의거하여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sup>6</sup> [https://www.facebook.com/help/390717618710100/?helpref=hc\\_fnav](https://www.facebook.com/help/390717618710100/?helpref=hc_fnav)

## [Instagram 의 사전경고 조치]<sup>7</sup>



당사는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검색 제한, 게재 제한에 관한 로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할 것입니다.

### E.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노력들

리소스. 고객 센터에는 플랫폼 사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불법촬영물등을 신고하는 방법 등)이 제공됩니다:

[Facebook 고객센터](#) | [Instagram 고객센터](#)

고객 센터 전기통신사업법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는 콘텐츠 유형
- 불법촬영물등이라고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

<sup>7</sup> [https://help.instagram.com/1384763831858913/?helpref=hc\\_fnav](https://help.instagram.com/1384763831858913/?helpref=hc_fnav)

- 신고 제출 후 단계

또한 고객 센터 내에서 중요한 안전 관련 질문을 해결하고 사용자를 추가 리소스로 안내합니다. 특히 당사는 이용자들이 아동 학대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콘텐츠를 공유 또는 다운로드하거나 콘텐츠에 댓글을 달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당하는 아동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이를 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불법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사진을 발견 시에는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안전 관련 질문을 해결하고 이용자를 추가 리소스로 안내하는 안전 센터에는 안전 관련 정책, 도구 및 리소스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됩니다:

- [Facebook 안전 센터](#): Facebook 안전 센터에는 [부모](#), [청소년](#), [온라인 행복 지원](#) 및 [괴롭힘](#) 관련 전용 섹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의 공유](#)와 같은 기타 특수 섹션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Facebook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의 공유에 대처하고 신고 및 대응하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는 전용 [피해자 지원 허브 및 툴킷](#)<sup>8</sup>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지연 교수](#)<sup>9</sup>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현지 실정과 문화를 고려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Instagram 안전 센터](#): Instagram 안전 센터에는 [온라인 괴롭힘](#) 전용 섹션, 한국 전문가와 함께 개발된 [부모](#)를 위한 가이드 및 안전 관련하여 당사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법당국과의 협조.** 당사는 아동 학대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등을 포함한 아동 온라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당국 파트너와 광범위하게 협력하며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성 및 아동 관련 안전 문제를 포함한 안전 문제를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의 협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동 학대의 경우 문제가 발견된 지역을 막론하고 당사의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모든 사례를 실종 및 학대 아동 보호 센터(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신고하며, NCMEC는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경찰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찾고 돕습니다.

2019년 8월, NCMEC는 Meta가 후원하고 당사 엔지니어의 안내 및 도움을 받아 개발된 업데이트형 사례 관리 도구를 선보였습니다. 신고된 아동 대상 성적 학대 사례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

<sup>8</sup> <https://www.facebook.com/safety/notwithoutmyconsent/>

<sup>9</sup> <http://gsecp.hufs.ac.kr/>

과 대응을 더욱 쉽게 해주는 이 도구는 현재 대한민국 경찰청 등 전 세계 사법당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cebook.com/safety/groups/law/guideline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접수된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의 신고, 삭제 요청 등과 관련하여 신고 건수, 내용, 처리 기준, 검토 결과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Facebook 과 Instagram 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신고 양식을 통해 제출된 신고 건수 및 처리 결과를 보여줍니다. 신고 건수 및 처리 건수는 신고된 또는 삭제된 콘텐츠의 건수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한번에 복수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 결과 통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2	7	2	1	5	9	3	6	4	1	1	9	50
		기관·단체	0	0	7	7	5	5	16	14	17	8	36	10	125
		소계	2	7	9	8	10	14	19	20	21	9	37	19	175
	신고사유 <sup>10</sup>	성적 불법촬영물	1	7	2	6	8	13	16	20	20	4	14	11	122
		성적 허위영상물	0	0	0	0	0	0	0	0	3	0	0	2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	0	7	2	2	1	3	0	1	4	28	7	56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2	7	7	4	9	12	19	19	16	6	29	10	140
	방심위 심의요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2	4	1	2	0	1	5	3	8	9	35
	소계		2	7	9	8	10	14	19	20	21	9	37	19	175
	삭제·차단	성적 불법촬영물	1	7	0	3	7	11	12	18	15	5	29	10	118

<sup>10</sup> 신고자는 콘텐츠 1건 신고 시에 복수의 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유 <sup>11</sup>	성적 허위영상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	0	7	1	2	1	7	1	1	1	2	0	24

---

<sup>11</sup> 복수의 사유로 콘텐츠 1 건의 게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분류	주 책임자
이름	Neil Potts
부서	콘텐츠 정책
직급	디렉터
지정 일자	2020년 12월 10일

## 4. 내부 교육 및 지원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 및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Meta 의 관련 팀은 각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 Global Market Operations 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Facebook 커뮤니티 규정의 구현을 위한 운영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든 Global Market Operations 팀 소속 직원은 Facebook 커뮤니티 규정에 따른 콘텐츠 검토를 위해 최소 3주의 교육(합의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이미지 및 아동 학대 이미지 관련 교육 5 시간 포함)을 받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Scaled Regulatory Operations 팀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신고 양식과 관련된 운영 절차 및 숙련도를 중심으로 교육세션(각 세션별 약 30 분)을 시행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에 대해 이루어진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석자	교육시간	교육기관
법정교육	2021-11-28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 교육	Neil Potts	2 시간	방송통신위 원회